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0580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5. 20.

판 결 선 고 2021. 6. 17.

제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가평군법원 2020. 4. 23. 선고 2019가소10175 판 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2.부터 2021. 6.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945,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가 당심에서 항소취지만을 감축하였지만 청구취지도 함께 감축한 것으로 본다).

이 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는 2017. 4. 25. C 주식회사로부터 D공사를 일괄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이고,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E에게 재하도급하였다. 피고는 E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재하도급 받았다가 2017. 8월경 E의 재하수급인 지위를 인계받았다.

나. C 주식회사가 2017. 3. 29. F로부터 경기 가평군 G 소재 원룸 H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10,000원(수도요금 포함), 임대차기간 2017. 4. 3.부터 2018. 4. 2.까지로 임차하였는데, 피고의 근로자들이 위 원룸을 사용하였다. 원고가 2017. 6. 6.부터 2017. 11. 2.까지 I에게 6차례에 걸쳐 7개월분 차임 합계 2,17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2017. 9. 16. 원고에게 2개월분 차임 합계 62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J에게 가설자재대금으로 2017. 9. 15.에 2,739,000원, 2017. 10. 17.에 825,000원, 2018. 1. 16.에 5,731,000원의 합계 9,295,000원을 지급하였고, K크레인에게 크레인 사용료로 2017. 11. 8.에 55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L에게 인건비로 2018. 3. 15.에 2,55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2018. 10. 31.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이 사건 원룸 차임, 가설자재대금, 크레인 사용료, 인건비로 합계 19,322,000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 내용증명우편이 2018. 11. 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①J 주식회사에게 가설자재대금 합계 9,295,000원을, ②K크레인에게 크레인 사용료 550,000원을, ③L에게 인건비 2,550,000원을, ④F에게 이 사건 원룸 임차료 1,55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변제한 가설자재대금 등 합계 13,945,000원(= 가설자재대금 9,295,000원+ 크레인 사용료 550,000원+ 인건비 2,550,000원+ 이 사건 원룸 임차료 1,5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원룸 차임 이외의 이 사건 가설자재대금, 크레인 사용료, 인건비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①J 주식회사에게 가설자재대금 합계 9,295,000원을, ②K크레인에게 크레인 사용료 550,000원을, ③L에게 인건비 2,55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가설자재대금, 크레인 사용료, 인건비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원룸 차임 부분에 관한 판단

1) 위에서 본 바와 같은, ①C 주식회사가 이 사건 원룸을 임차하였으나, 피고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원룸을 사용한 사실, ②원고가 2017. 6. 6.부터 2017. 11. 2.까지 임대인인 I에게 7개월분 차임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2017. 9. 16. 원고에게 2개월분 차임을 송금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원룸 차임을 최종적으로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추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에서의 판단을 더하여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먼저 부담하였던 7개월분 차임액 2,170,000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개월분 차임액 62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550,000원(= 2,170,000원- 6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차임의 지급을 구한 다음 날인 2018. 11.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6.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지연손해금의 비율에 관하여 위에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2018. 6.경 이 사건 원룸 차임을 공제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원룸 차임의 정산을 마쳤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산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와 같은 항변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명한, 판사 최희동, 판사 안철범